의안번호	2210433
의 뢰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9.
추계번호	25F28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상풍력, 소형모듈원자로(SMR) 분야 추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상풍력, 소형모듈원자로를 추가 –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해상풍력, 소형모듈원자로 등을 포함한 10개로 확대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 ·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·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해상풍력과 소형모듈원자로(Small Modular Reactor, 이하 'SMR')을 포함하는 경우, 해당 분야의 연구 · 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등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높아짐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)

○ 국가전략기술※은 연구 ·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 · 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
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[1]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[2]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[2]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○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해상풍력과 SMR을 포함한 10개 분야로 확대

-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025년 2월「조세특례제한법」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8개 분야가 되었음

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
→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해상풍력 및 SMR 분야 추가

-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[별표 7의2]에 규정

❑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되는 해상풍력과 SMR 등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등의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○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해상풍력과 SMR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
- 참고로, 해상풍력을 포함하는 풍력에너지 관련 기술과 SMR 관련 기술은 각각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의 탄소중립 분야와 에너지·환경 분야에 포함되어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포함될지 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2]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의 해상풍력 및 SMR 기술범위

기술분야		기술
탄소중립	신재생에너지	(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회전동력을 증속시켜 발전기에 전달하는 부품 설계 및 제조기술) 블레이드의 회전력을 증속하여 발전기에 전달하는 유성기어, 축, 제어기 등 설계 및 제조기술 (풍력에너지 생산 기술로서 발전기 및 변환기 제조기술) 정속운전 유도발전기용 변환기,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자와 고정자를 통해 발전하는 발전기 등 설계 및 제조기술 (풍력발전 블레이드 기술) 8MW급 이상 풍력발전 블레이드 설계 및 제조기술 (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기술) 대용량 전력 전송을 위한 고밀도 장조장 특성을 갖는 해저케이블 등 설계 및 제조기술
에너지환경	원자력	(SMR 설계 및 검증 기술) SMR 노심 설계 및 해석 검증기술, 계통 핵심기기 설계기술 등 (SMR 제조 기술) 탄력운전 대응 열적성능강화 핵연료 집합체 개발 및 제조기술 등

○ 또한, 해상풍력 및 SMR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기술 분야별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- 참고로,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3년 법인세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23,760	9,492	11,968
통합투자세액공제	10,332	38	7,43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